

의안번호	2205776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4.12.18.
추계번호	24B5306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 (국가 보조사업 자의 고령자 고 용의무) 신설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인 사 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 하여야 함. 다만, 보조금액의 규모, 보조사업의 종류 및 업무 의 특성상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	의무규정
2	안 제19조(정 년)	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(제1 항)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미만 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봄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19조의2 (정년연장에 따 른 필요한 조치 등)	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2항)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22조(정 년 연장에 대한 지원)	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인사 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·자문,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(국가 보조사업자의 고령자 고용의무) 신설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사업비 규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– 본문참조
2	안 제19조(정년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참조
3	안 제19조의2(정년연장에 따른 <u>필요한 조치</u> 등)		
4	안 제22조(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)	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12조의2) 개정안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사업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- 개정조항은 고령자 고용률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사업비 규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(안 제19조) 현행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,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,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 규모에 제한이 있으므로, 이를 초과하여 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
 -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, 이들에게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평균 재직기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퇴직수당 등의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정년의 연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, 정년연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기업 및 산업의 규모, 노사조합의 교섭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된다는 점과¹⁾ 장래에 발생할 정년연장에 따른 채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
□ (안 제19조의2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해당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며,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됨
 -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행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없으며, 제2항에 근거하여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임금피크제 지원금 사업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1) 고용노동부·한국노동연구원, 「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」, 2020.

[표 1]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2제2항에 따른
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(안)
임금피크제지원금	1,781	280	2	55	8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	26,724	4,057	237	90	—
합계	28,505	4,337	239	145	8

주: 2021~2023년은 결산액, 2024년 예산액임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의 추진 내용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(안 제22조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·자문,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됨
 -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행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2조(정년연장에 대한 지원)을 직접적으로 근거조항으로 하여 시행되는 지원금 등의 사업은 없으나,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
 -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를 도입하고, 정년에 다다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3년까지 해당 사업주를 지원을 하는 사업임

[표 2]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(안)
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(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)(1347-350)	10,407	22,631	19,101	34,982	35,706

주: 1.2021~2023년은 결산액, 2024년 예산액, 2024년 정부안

2.고용보험법 제23조(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(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)을 근거로 추진

자료: 고용노동부

- 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참고

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개요

※ 자료: 고용노동부

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○ 사업내용

- **(개 요)**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·폐지하거나,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
- **(지원대상)**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중견기업
- **(지원요건)** 정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· 폐지,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
- **(지원수준)**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

○ ('24년 예산) 350억원

② 고령자 고용지원금

○ 사업내용

- **(개 요)**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
- **(지원대상)**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중견기업
- **(지원요건)** 60세 이상 고령자를 3년 평균 초과 고용
- **(지원수준)**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
○ ('24년 예산) 270억원